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06호, 2025. 7. 22.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

아울러, 방탈출카페업, 키즈·만화카페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기설비를 응급조치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추가(안 제7조제4항)

나. 임산부와 다자녀가구(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대상으로 확대 (안 제8조제1항)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규정하고, 과태료 일반기준의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화하여 규정(별표 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및 같은 항에 제13호·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방탈출카페업: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13. 키즈카페업: 다음 각 목의 영업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14. 만화카페업: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공간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제8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조 및 같은항에 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

7. 다자녀가구(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제2호 마목부터 서목까지를 바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의2 호	200만원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 ③ (생략)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④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설></u>	<u>마. 방탈출카페업: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u>
9. ~ 12. (생략)	9. ~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13. 키즈카페업: 다음 각 목의 영업</u>
	<u>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u>
	<u>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u>

<신 설>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 시설을 갖춘 영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14. 만화카페업: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공간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u>
<u><신 설></u>	<u>7. 다자녀가구(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u>
<u>6.</u> (생략)	<u>8.</u>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연 락 처	(044) 203 - 3982